

#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지원자 서약서

성명		생년월일	
소속기관		지원 모집단위	

본 지원자는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 입학 지원함에 있어서 아래 내용을 확인했으며, 해당 사항을 준수할 것입니다. 준수하지 못했을 경우 추후 입학 허가 취소, 입학 취소, 제적, 학위 취소가 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1.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연·산 협동과정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지원 시점에 연세대학교와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재직 중”이어야 함(재직 예정자 지원 불가). 입학 이전 해당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자발적 퇴사/징계해고/근로계약기간 만료 퇴사 시 입학 허가가 취소됨.(입학 이전에 자발적 퇴사/징계해고/근로계약기간 만료 퇴사한 것이 입학 이후에 확인될 경우 입학이 취소됨)
2. 학·연·산 협동과정으로 입학 허가를 받아 입학한 학생은 졸업 시(학위수여일)까지 입학 지원 시점에 재직 중이었던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 재직하여야 하며, 해당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자발적 퇴사/징계해고/근로계약기간 만료 퇴사/무단 휴학 시 즉시 제적 처리됨
3. 학·연·산 협동과정으로 입학 허가를 받아 입학한 학생이 재학 중 자발적 퇴사/징계해고/근로계약기간 만료 퇴사/무단 휴학한 사실이 학위 취득 후 확인될 경우 학위 취소 처리되며, 퇴직일 혹은 무단 휴학일에 맞춰 소급 적용하여 제적됨
4. 자발적 퇴사/징계해고/근로계약기간 만료 퇴사/무단 휴학한 사실을 고의로 숨겨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적 업무를 방해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므로 해당 상황이 발생할 경우 즉시 그 사실을 대학원에 알려야 함

※ 근거조항

연세대학교 대학원 학칙 「학·연·산 협동과정 운영위원회 및 학위과정 운영에 관한 내규」

제12조(입학) ② 지원자격은 대학원 학칙 제5조(지원자격)에 정하는 바와 같으며, 지원 시점에 우리 대학과 협약을 맺은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근로계약을 맺고 재직 중인 자로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의 대표에게 본 과정 지원 추천을 받은 자에 한한다.

제13조(학적) ① 등록, 휴학, 제적, 복학, 재입학은 대학원 학칙을 따른다. 다만,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적 처리된다.

1. 재학기간 중 학생의 의사에 따라 소속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 퇴직하거나 징계해고,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퇴직하는 경우
2. 소속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와 협의없이 휴학을 할 경우

202    년    월    일

지원자: \_\_\_\_\_(인)\*

\* 자필 서명 필수

**대학원장 귀하**